

등록번호	여성가족과-1840
등록일자	2016. 1. 13.
결재일자	2016. 1. 1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보육행정팀장	여성가족과장	복지문화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임경아	김상식	방동숙	오제성	조인동	01/14 문석진
협 조					

구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변경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
서 대 문 구
여성가족과

구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변경계획

1 지원변경사항

□ 2016년 구립어린이집 보조교사(전, 비담임교사)의 지원액 변경

- 대 상 : 구립어린이집 32개소
- 지원시기 : 2016년1월부터
- 변경사유

- 「2016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통보」 [보육담당관-24483(2015.12.31.)]

☞ (서울시)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과 ‘15년 9월부터 시행된 국고보조사업인 보조교사 사업이 통합되어 2016년부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사업으로 시행

구분	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	보조교사	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
시행시기	2014년1월	2015년9월	2016년1월
지원대상	국공립,서울형,부모협동,다문화	민간,가정 (영아반3개이상,평가인증,정원충족률80%이상)	전시설 (최근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않은 전시설)
근무시간	1일 6시간 (*구립 1일 8시간)	1일 4시간	1일 4시간
월급여	비담임교사 1,140천원 (*구립비담임 1,390천원) 보육도우미 880천원	760천원	보조교사 784천원 보육도우미 630천원
실적 (개소)	비담임61,도우미3	보조28	보조105, 도우미46 (*확정내시상 계획)

- 보조교사로 시행할 경우 구립어린이집 비담임교사의 근무조건 (1일근무 8시간→ **4시간**, 월보수 1,390천원→ **1,034천원**)이 변경되어 처우 및 직무가 달라지며, 이에 구립연합회의 요청 등으로 종전 지급되던 구립비담임교사 차액급여를 조정하여 현행 지급액 수준으로 지원

○ 변경지원내역

구립어린이집 보조교사에 한하여 인건비 차액지원분 변경지원

- 현행(2015년까지) : 비담임급여(1,140천원)+구립비담임차액급여(**250천원**)⇒ 1,390천원
- 변경후 : 보조교사급여(784천원)+구립보조교사차액급여(**606천원**)⇒ 1,390천원

☞ 차액급여 **250천원** ⇒ **606천원**

2 지원배경 및 검토사항

□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민원 : 계속지원요청

- 구립보육시설의 보조교사(전,비담임교사)는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(서울형, 다문화 등 6시간) 호봉을 인정하여 구인건비 보조금과의 차액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등 담임교사와 동등한 처우 및 직무를 맡고 있음

[지급현황] 구립 5호봉 비담임교사 월지급액 1,715,530원

1,140,000원(비담임급여)+ 250,000원(추가지원급여)+ 325,530원(어린이집부담)

↓
시구비지원

↓
구비지원

- 보조교사로 전환될 경우 기존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뿐 아니라 원장의 업무과중, 해당교사의 퇴직 등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속 지원이 불가피함

□ 검토사항

- 2005년 「보육시설 자체 지원사업 지원계획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구립비담임교사에 한하여 당시 5호봉수준 (1,354~1,390천원)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원장 및 보육교사의 업무를 보조함
-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비담임교사제를 실시하자 구립어린이집의 비담임교사에 한하여 차액250천원 [1,390천원(기존 구보조금) - 1,140천원(서울시 비담임급여)]을 추가 지원하여 근무시간 및 보수의 변동없이 운영하게 함
- 2016년 서울시 보조교사 사업 가내시가 2015년 11월에 통보됨에 따라(2015.12.31.지원계획 통보) 구립 어린이집의 비담임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및 보수가 대폭 축소됨으로서 타시설 담임교사로의 이직 등 퇴직이 예상되고, 원장의 경우 보육아동의 신규입소준비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에 행정인력의 공백, 업무가중 등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지원 필요.

3

사업개요 및 예산사항

□ 사업개요

- 지급대상 : 구립어린이집 32개소
- 사업기간 : 2016.01.01.~12.31
- 총사업비 : **232,704천원**

☞ 산출내역: **606천원**[기존지급액(1,140+250천원)-보조교사784천원]×32개소×12월

- 확보액 : **120,000천원** (2016년 구립어린이집 비담임차액급여 편성액)
- 추가소요액 : **112,704천원** (총사업비232,704천원 - 확보액120,000천원)

□ 예산확보방안

○ 「어린이집 운영지원」 사업의 부기변경

- 「어린이집 운영지원」 사업(보조교사 차액급여지원 포함)의 집행추이에 따라 부기변경(조정)

○ 「어린이집 지원」 사업의 예산변경

- 사유 및 시기 : 부기변경 후 예산부족시
- 예산변경내역
 - 「어린이집 지원」의 '종사자 인건비 지원'의 구비를 「어린이집 운영 지원」의 '구립어린이집 보조교사 급여지원'으로 예산변경
 - 「어린이집 지원」의 '종사자 인건비 지원' 중 비담임교사 인건비가 (시비보조)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변경(2015.12.31.일자 확정내시)됨에 따라 잔여 구비에 대하여 변경처리. 끝.